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9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이상식・이병진・김문수

양부남 • 서미화 • 임호선

임미애 · 이건태 · 유준병

정진욱 · 김동아 · 이강일

이언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, 유치원의 유아, 초·중·고 학생,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.

그러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어린이,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,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"을 "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·장애인복지시 설·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
- 6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7조(소방교육・훈련) ① (생 | 제17조(소방교육·훈련) ① (현 |
| 략) | 행과 같음) |
| ②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| 2 |
|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| |
|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 | |
|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| |
|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 | |
| 로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| |
|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 | |
| 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| |
| 이 경우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| |
|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<u>어린이</u> | <u>어린이</u> |
| 집・유치원・학교의 장 또는 | 집・유치원・학교・장애인복지 |
| <u>장애인복지시설의 장</u> 과 교육일 | 시설ㆍ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|
| 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 | 노인복지시설의 장 |
| 다. | |
| |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5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 |
| | 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 |
| | 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 |
| | <u>동</u> |
| <u><신 설></u> | 6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 |

| | 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 |
| | <u>୍</u> |
| ③ • ④ (생 략) |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|